문서번호	기획예산과-104239					
결재일자	2015.9.7.					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				
방침번호	부구청장 방침 제152호					

주	무	관	예	산	팀	장	기획예산과장	기획	재 정 국 장	부	구	청	장
	유병욱			이정심			임인재	장기헌		전결 09/07 <b>정연찬</b>			
협 _													
조													

# 「2016~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」수립계획

□ 추진근거 : 지방재정법 제33조	
□ 계획기간 : 2016 ~ 2020년	
□ 수립대상 :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 <sup>-</sup>	<del></del> <del></del>
□ 주요내용 : 재정운용 목표 및 연차	별 투자계획
□ 추진일정	
○ 연도별 투자계획 작성 및 세입추계	: 9.18.한
<ul><li>중기지방재정계획 조정</li></ul>	: 10. 23. 한
○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확정	: 10. 30. 한
○ 구의회 제출	: 11. 18. 한

#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

# 사전 검토사항

### 해당항목에 '■'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 토 항 목	검 토 여 부	비고
추진근거	<ul><li>■ 법 령 □ 방 침 □ 별도규정 없음</li><li>( 지방재정법 제33조 )</li></ul>	
사 업 추 진 유 형	□ 신규사업 ■ 기존사업   □ 일회성사업 ■ 계속사업 ( 5년 )	
예 산 확 보 사 항	□ 신규 확보 필요 ■ 확보 완료   (국 , 시 , 구 )   □ 비예산 사업	예 산 팀 협 조 ( )
이해관계인 유 무	○ 주 민 : 유□ ( ) 무■   ○ 단 체 : 유□ ( ) 무■	
타 자 원 활용가능성	○ 중앙부처 : 유□ ( ) 무■   ○ 서울시 : 유□ ( ) 무■   ○ 민간단체 : 유□ ( ) 무■   ○ 기업체 : 유□ ( ) 무■	
홍 보 필 요 성	○ 홍보대상 : 유□ ( ) 무■   ○ 보도자료 : 유□ 무■	

### 「2016 ~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」수립계획

우리구 행복플랜, 동특성화 전략 등 민선6기 정책방향을 중·장기적으로 전망한 5개년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 재원배분 및 계획적인 재정 운용에 기여하고자 함

## □ 추진개요

☐ **거**: 지방재정법 제33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)

2016~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(행정차지부)

□ 계획기간 : 2016 ~ 2020년

□ 수립대상 :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

□ 주요내용

- (재정목표)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·전략 등 기본방향
- (재정전망) 세입·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
- (**투자계획**)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

### 2016 ~ 2020년 수립기준 주요 변경사항

### □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구분

○ '의무지출'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'재량지출'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추가

### □ 지역통합재정통계 추가

○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기금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통합한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의 전망(총계기준 작성)

### □ 추경사업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 강화

○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 미 반영된 추가 국고보조, 공모사업 등 신규사업은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

### 2016 ~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

### □ 기본방향

- 행복플랜 등 민선6기 구 정책방향 구현을 위한 재정계획 수립
-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
-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 활용
- 주민 등 각계 의견수렴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반영

### □ 작성기준

- **('16년도)**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'15년도 최종 예산을 기초로 작성
- **('17년도 ~)** '16년도 예산안을 기초로 성장률·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
  - 「2015~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」 상의 분야별 지출총액을 기초로 작성하되, '16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부 가감 조정
  - 「2015~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」이후 법령 제·개정, 국고보조사업 수요 조정 등이 있거나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, 투자 계획을 조정하여 반영

### □ 작성내용

- 중기 세입 전망: 징수과, 사회복지과, 교통지도과, 기금 관련 부서
  - 자체재원(지방세 및 세외수입) : 최근 5년간 변동율(징수실적 등)을 참고하여 추계
  - 이전재원(교부세 및 보조금) : 국가경제 전망(세제 개편 등) 및 최근 5년간 보조금 확보 실적 등 고려
-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
  - 재정운용목표 : 세입 및 지출규모·재정수지·채무관리 수준 등을 설정
  - 재원배분방향 : 분야별 목표(5년후 미래상) 및 주요 성과지표 제시

#### ○ 중기재정계획 총괄

- 세입·세출 : 세입·세출계획 총괄(표) 및 세입재원별, 회계별, 분야별, 연도별 내역
- 채무 전망 및 관리 : 계획기간 중 부족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, 연도별 채무의 증감 및 주요 요인(사업), 채무관리계획 등 작성
-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: 최근 3년의 통합재정수지를 기초로 향후 5년간 전망
- 회계별 :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의 총괄계획 및 개별계획
- 분야별 : 분야별 총괄표 및 비중, 연도별 변화 등
- **의무지출과 재량지출** : 의무지출·재량지출 증가율 및 산출내역 등
- 통합재정통계 :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, 공단, 출자-출연기관을 통합한 재정상황

#### ○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

- 정책방향(5년 후, 중점 투자 및 성과지표), **투자계획**(정책·단위·세부사업 단위)
- 분이별 분류: 시업예산의 기능별 분류 적용, 단위시업 내 세부시업 기준으로 작성

### ○ 세부사업계획: 전부서

- 연도별 사업경비 : 사업예산, 행정운영경비, 재무활동

※ 사업예산 : 사업구조화上의 모든 사업

- 주요사업조서 작성대상 :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

#### 주요사업조서 작성 기준

-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(공연·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3억 원 이상)
- 해외투자 사업 및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투·융자하는 사업은 5억 원 이상
- ※ 총사업비 기준
  - 기투자 + 5개년계획(2016~2020) + 향후 투자액이 모두 포함된 사업비 (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계획기간 내 사업비 합계)
    - ⇒ 시군구 : 국비+시도비+시군구비+지방채

# Ⅳ 추진일정

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계획 시달

기획예산과

2015. 9. 7

세입전망, 연도별 투자계획 제출

(세입) 관련부서 (세출) 전부서

2015. 9. 18. 한

중기지방재정계획 조정

기획예산과

2015. 10. 23 한

재정계획· 공시 심의위원회 개최 및 중기계획 확정

기획예산과

2015. 10. 30 한

구의회 제출

기획예산과

2015. 11. 18 한

# Ⅴ 행정사항

- □ 부서별 자료제출 기한 준수 : 2015. 9. 18 한
  - 연도별 투자계획 작성 제출 : 전부서
  - 지방세, 세외수입 전망 총괄 제출 : 징수과
  -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전망 제출 : 사회복지과, 교통지도과
  - 기금 세입·세출 전망 제출 : 기금 관련부서
  - 통합재정통계 자료 제출 : 동작구시설관리공단, 동작복지재단
- 붙임: 1.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(행정자치부) 1부.
  - 2. 의무재량지출 구분 기분 1부.
  - 3.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서식 1부.
  - 4. 통합재정통계 자료 작성서식 1부. 끝.